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4. 검토의견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한봉전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총액인건비정원제 시행으로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쇠퇴 분야를 축소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 수요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선 4기 시정비전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부 본부·팀제 도입 등 기구개편에 따라 과단위 조직에 “단”, “팀”, “실”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고, 환경국을 “환경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제8조 및 제12조).
- 다. 경제과학국 업무중 기업지원업무의 일부와 국제통상업무를 신설되는 “투자통상본부”로 이관함(안 제7조).
- 라. “투자통상본부”에 투자유치, 기업지원 및 국제통상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안 제8조).

- 마. 사적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함(안 제10조).
- 바. “보건복지여성국”에 문화체육국의 업무중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함(안 제11조).
- 사. “환경녹지국”에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중 하천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함(안 제12조).
- 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부서로 이관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자.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장제1절).
- 차. 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장제7절).
- 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분리함(안 제4장제9절 및 제10절).

3. 검토의견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행정기구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장 총칙에서 목적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과 담당관·과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조례 안 제2장에서는 부서장 등 본청의 기구를, 조례 안 제3장에서는 공무원교육원 등 직속기관 기구를, 조례 안 제4장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사업소 기구의 설치 등 제4장 제8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전부개정 조례 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민선 4기 시정비전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신설 된지 2년여 만에 폐지 또는 분리되는 조직이 발생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하여는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중앙부처와 담당부서가 상이한 자원봉사, 하천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 향후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등을,

행정부시장 밑에 정책프로젝트팀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조직과의 중복 및 조직위의 조직이 될 우려성을,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시립박물관 건립 준비 등을 위하여는 향토사료관과 선사박물관을 통합한 별도조직으로 설치하는 것 등을,

제4장 사업소의 명칭이 사업소와 사무소로 분리되어 있어 시

민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무소로 통일하는 것을,

여성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기관의 장이 아닌 기관 밑에 기관을 설치한 것 등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